



: 2018-05-30

## 서울 행정법원

### 제 6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67933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취소  
원 고 1. A  
2. B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5. 4.

### 주 문

1. 피고가 2017. 6. 12.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사업비 90,00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6.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



년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 평가원장은 피고의 위탁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평가원장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5. 12. 18.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간은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1차년도(2015. 12. 18. ~ 2016. 12. 17.)와 2차년도(2016. 12. 18. ~ 2017. 12. 17.)도 각 9,000만 원(각 민간부담금 3,000만 원을 합하여 총액은 각 1억 2,000만 원이다)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인 원고 A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평가원장은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게 1차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원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5. 피고와 평가원장에게 1차년도 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중간서면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6. 12. 13. 평가원에서 재차 중간발표평가를 받았으나 그 결과도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라. 평가원장은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6. 12. 16. 원고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 '중단'을 통보하고, 2017. 3. 28.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환수하고, 원고 A에 대하여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재예정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4. 4. 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평가원장은 2017. 5. 23.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하여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의한 후, 2017. 5. 29. '자연재해로 인한 연구수행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미흡한 대응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9.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A에 대하여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성실하게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정성적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연구자료인 D 대량재배가 지연되는 바람에 1차년도



기간 내에서 특허출원, 논문발표, 학술발표와 같은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제재  
기준을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상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내  
용, 방법 및 기대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 목표

- 저수지 등 수면에 밀식 재배된 D을 이송장치까지 수면에서 이동시키는 견인장치 개발
- 견인된 D을 수중에서 이송용 차량적재가 가능한 지상(저수지 둑 등)으로 이동시  
키는 지상이송장치 개발
- 수확 기간 중 여러 곳에 산재한 D 수확 및 동절기 창고보관을 위해 이동설치가  
가능한 탈부착식 수확장치 개발

○ 연구내용

- <1차년도: 탈부착형 수상 견인장치 개발>
- 물성분석 - 가두리 장치 부력 측정, 밀식 D 견인력 및 부력 측정
  - 수상 견인장치 개발 - 견인용 부력구조물 개발, 엔진 연결형 회전식 견인장치 개  
발, 지지용 구조물 개발
  - 시작기 제작 및 성능검증 - D 재배 후 견인용 수확장치 성능 검증



<2차년도: 탈부착형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 물성분석 - 밀식 D 개체 인장력, 산물밀도 측정
-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 이송장치 수중 구동부 개발, 엔진 연결형 구동 및 이송장치 개발, 지지 장치 개발
- 시작기 제작 및 성능 검증 - D 재배 후 이송용 수확장치 성능 검증

○ 연구방법

□ 탈부착형 수상 견인장치 개발

- 수상 가두리 내에 밀식 재배된 D의 수확을 위해 저수지 제방 또는 지상이송장치 투입부로 D을 견인하는 장치로, 선행연구 결과(경남 진주 소재 저수지, 가로 50m, 세로 50m 규모 재배 수확 실험) 저수지 등 수면에 재배된 D을 수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 견인장치 설계를 위해 밀식 재배된 D의 견인력, 견인시 D의 안정적인 견인을 위한 D의 부력을 구명함
- 견인 구조물의 경우 견인시 수면에 떠 있는 D 상부로 상승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력조절장치가 필요하므로 D 견인에 적합한 견인 구조물의 부력을 구명함
- 견인 구조물의 견인을 위한 회전형 견인장치의 구동원은 농용 엔진 또는 경운기 등 원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80° 범위에서 견인방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견인장치를 개발함
- 견인장치 지지를 위한 구조물은 저수지 구조 및 수확기 저수량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물 설치용과 지상구조물 설치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함
- 여러 곳에 산재한 D의 수확 및 동절기 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탈부착식으로 개발함

□ 탈부착형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 견인장치로 이송된 수면상의 D을 저수지 제방으로 이송시키는 장치로, 선행연구



결과(위 저수지 재배 수확 실험) 벨트 또는 체인형 이송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 수중 이송장치 구동부 설계를 위해 밀식 재배된 D의 개체 인장력, 지상 이송장치 소요동력 및 장치 설계를 위해 D의 산물밀도를 구명함
- D 개체 인장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수중 구동부의 회전반경을 구명함
- 이송장치의 구동을 위해 농용 엔진 또는 경운기 등 원동기를 사용한 동력전달 기구를 개발함
- 이송장치 지지를 위한 구조물은 저수지 구조 및 수확기 저수량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물 설치용과 지상구조물 설치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함
- 여러 곳에 산재한 D의 수확 및 동절기 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탈부착식으로 개발함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활용방안

-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자립화시설 사업에 연소용 연료로 활용
-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하여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 해소를 위한 수질 개선사업에 활용
- 경상남도, 농어촌공사경남본부,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간척호 수질개선 및 화력발전소 연소용 연료제조 사업에 활용

기대성과

- D 재배·수확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업체 기술이전, 산업화
- D 판매를 통한 재배농가 소득창출
  - 생산량: 300~500톤/ha(함수율 90%)
  - 판매금액: 10,000원/톤
  - 판매수익금: 3,000,000~5,000,000원/ha
- D의 수질정화 기능에 따른 농업용수확보, 녹조제거 등 공공적 효과 창출



○ 연소용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화력발전소 등의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 경감

2) 원고들이 2016. 11. 15. 피고와 평가원장에게 제출한 1차년도 보고서(연차 실적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연구성과 목표 대비 실적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질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과	매출액	수출액	고용 창출	투자유치		논문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SCI						
최종목표	2	1	0	0	0	1	0	0	0	0	0	4	4	0	0	2	1	0	
당해년도	1	0	0	0	0	0	0	0	0	0	0	2	2	0	0	1	0	0	
달성률(%)	0	-	-	-	-	-	-	-	-	-	-	0	0	-	-	100	-	-	

○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주요 연구결과
물성분석	가두리장치 부력 측정	- 부력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자의 부력 측정 - 부력구조물에 사용된 부자 개수(300개)를 고려하여 구조물 부력 환산	- 부자의 부력 측정 결과 약 34.3N - 부자구조물 300개의 총 부력 측정 결과 약 10,290N
	D 견인력 측정	- D 중량, 견인속도에 따른 견인력 측정	- D의 중량별 견인력 측정 결과 약 0.9 ~ 1.39kgf(D 견인장치 설계시 견인중량에 따른 견인력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D 부력 측정	- D 중량별 부력 측정	- D 중량별 부력 측정 결과 약 1.79 ~ 1.99kgf



수상견인 장치 개발	견인용 부력구조물 개발	- 수상 견인용 부력 구조물 설계 및 제작	- 저수지에서 재배된 D을 제방으로 견 인하기 위한 '견인용 바' 개발
	엔진 연결형 회전식 견인장치 개발	- 경운기 작업용 동 력축 사용	- 경운기의 작업용 PTO축을 사용하여 엔진 연결형 회전식 견인장치 개발
	지지용 구조물 개발	- 작업하중 고려한 수상구조물 설계 및 제작	- D 견인장치 성능 실험을 위한 저수지 수면에 고정할 지지용 구조물은 가로 10m, 세로 5m, 높이 0.4m, 총 부력은 약 10,000kgf로 개발함
시작기 제작 및 성능 검증	D 재배	- 가로 50m × 세로 50m 크기의 재배시 설 설치 및 재배	- 견인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D 재배시 설을 거제시 E 소재 F저수지에 설치하고 D을 재배함
	견인장치 성능 검증	- 저수지에서 견인 장치 견인실험 수행	- 1차년도 시작기 목표성능은 부력구조 물(견인용 바) 견인량 100kg/회, 견인능 력은 1,000kg/hr인데, 위 F저수지에서 D 견인장치 성능 실험 결과, 견인능력은 1,250kg/hr이고, 견인량은 최대 400kg/ 회를 달성함

○ 1차년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항목	비목	금액	계획금액	코드번호		비고
				사용액	C-08 잔액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27,000	27,000	0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12,000	12,000	0	
	소 계			12,000	12,000	0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47,416.6	46,591.6	825	
		현물	27,000	27,000	0	
	연구활동비		0	0	0	
	연구과제추진비		5,235.4	4,912.5	322.9	
	연구수당		7,442	0	7,442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87,094	78,504.1	8,589.9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20,906	20,906	0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20,906	20,906	0
연구개발비 총액			120,000	111,410.1	8,589.9	

○ 1차년도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성과목표		코드번호	C-06-03
달성 (D) 부력, (D) 단위중량당 견인력)	향 후 견인장치 동력 선정 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견인장치 견인능력	수중 식물 견인장치로 활용가능성 높음		
특허, 논문 실적	1년차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예정. 특허 출원 종료 후 논문 발표 예정		
종합	(D) 의 견인성능 및 장치개발의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2차 년도	2016년	물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식 <input type="text" value="D"/> 개체 인장력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 구동부 소요동력 및 이송장치 개발(수중 구동 또는 지상 구동 방식)을 위해 밀식 재배된 <input type="text" value="D"/> 의 개체 인장력 측정</li> </ul> </li> <li>○ 밀식 <input type="text" value="D"/> 산물밀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 이송장치 소요동력 및 이송장치 개발(벨트형 또는 체인형)을 위해 밀식 재배된 <input type="text" value="D"/> 의 산물밀도 측정</li> </ul> </li> </ul>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 구동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 위 <input type="text" value="D"/> 을 지상이송장치로 떠 올리는 회전형 구동장치 개발</li> <li>- <input type="text" value="D"/> 의 개체 인장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회전부 지상 회전형 또는 수중 회전형으로 개발</li> </ul> </li> <li>○ 엔진 연결형 구동 및 이송장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put type="text" value="D"/> 지상 이송을 위한 엔진 구동형(농용 엔진 또는 경운기 등) 구동장치 개발</li> <li>- <input type="text" value="D"/> 지상이송을 위한 벨트형 또는 체인형 탈부착식 이송장치 개발</li> </ul> </li> <li>○ 지지장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부착이 가능한 이송장치 지지용 지상 구조물 개발</li> <li>- 저수지 구조 및 수량 변동에 따라 수상구조물 설치용 및 지상 설치용으로 구분 개발</li> </ul> </li> </ul>
		시작기 제작 및 성능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송용 수확장치 성능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송용 수확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시작기 제작</li> <li>- <input type="text" value="D"/> 재배(0.1 ha) 및 수확실험을 통한 시작기 성능 검증</li> </ul> </li> </ul>

3)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을 통해 중간서면평가와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심사위원	정량적 평가(A)	정성적 평가(B)	종합점수 {(A×0.2)+(B×0.8)}
중간서면 평가	A	0	67	53.6
	B	0	76	60.8
	C	0	36	28.8
	D	0	79	63.2



	E	0	62	49.6
	F	0	69	55.2
	평균	0	64.83	51.86
중 간 발 표 평 가	G	25	36	33.8
	H	25	90	77
	I	25	57	50.6
	J	25	54	48.2
	K	25	59	52.2
	L	25	66	57.8
	평균	25	60.33	53.26

4) 원고 A은 2016. 8.경 이 사건 과제 의 1차년도 연구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시작기(D 수확장치)의 특허출원을 위하여 G법률사무소 변리사 H과 상담하였는데, 당시 H은 원고 A에게 실험결과를 통해 시작기의 기술적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입증한 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5) 원고 A은 2017. 4. 6.경 『J』 에 이 사건 과제에 관한 1차년도 연구수행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J」 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6) 원고 A은 거제시 E 소재 F저수지에 재배시설(50m × 50m)을 설치하고, 1차(2016. 7. 16. ~ 2016. 7. 23.), 2차(2016. 8. 4. ~ 2016. 8. 31.), 3차(2016. 9. 7. ~ 2016. 10. 13.)에 걸쳐 D 밀식재배를 시도하였는데, 1차 식재는 수위 저하로 D이 고사되어 실패하였고, 2차 식재는 바람으로 D을 둘러싼 가두리가 유실되어 실패하였으며, 3차 식재는 성공하여 2016. 10. 13. 현장실험을 종료하였다.

7) 거제시의 2016. 7. 16.부터 2016. 8. 4.까지의 강수량은 20.6mm에 불과하였고, 2016. 8. 27.에는 풍속 5.4m/s의 바람이 불었다.

[인정근거] 갑 제1~3, 6, 10~12호증, 을 제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법률사무소 H 변리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하나,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과제 1차년도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간서면평가 결과는 평균 51.86점이고, 중간발표평가 결과는 평균 53.26점으로 모두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과제 1차년도 연구개발의 정량적 연구성과목표는 특허출원 1건, 논문발표 2건, 학술발표 2건, 정책활용 1건이었음에도 원고들은 1차년도까지 정책활용 1건만 달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1차년도 연구수행 결과를 '미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이러한 경우 피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9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11항 [별표 5]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로 보아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내부 훈령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중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인 과제'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재량준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재량준칙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3)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의2, [별표 6]는 '최초 협약 체결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경우(제1호)',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제2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음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성적 연구개발목표였던 물성분석(가두리장치 부력측정, D 견인력 측정, D 부력 측정), 수상견인장치 개발(견인용 부력구조물 개발, 엔진 연결형 회전식 견인장치 개발, 지지용 구조물 개발), 시작기 제작 및 성능 점검(D 재배, 견인장치 성능 검증)을 모두 수행하여 나름의 목표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중간서면평가 및 중간발표평가 당시 정성적 평가 결과가 모두 연구개발 '계속'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과제 수행 전에 가로, 세로





각 50미터 규모의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에서 D을 재배, 수확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였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실적이 원고 A이 이 사건 과제에의 연구 수행자로 지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과제에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1차 식재 기간 중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하여 2,500m<sup>2</sup> 내 D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사하게 하거나, 2차 식재 기간 중 초속 5.2미터 정도의 바람에 재배시설이 유실되게 한 데에는 원고 A이 선행연구의 경험 및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재배, 수확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업체 기술이전, 산업화'가 이 사건 과제에의 기대성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배 실패가 D 재배 가능 기간의 기후적 특성 하에서, 이 사건 과제에의 기대성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원고 A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이러한 잘못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에의 1차년도 연구개발의 정량적 연구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외부 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과제에의 연구책임자로서 1차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2016. 10. 13. 현장실험을 종료한 후 1차년도의 종료일인 2016. 12. 17.까지 적어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 원고 A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다만, 원고들이 정량적 연구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1차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은 원고 산학협력단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원고 A에 의해 1차년도 연구수행을 위해 소비되었고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설령 원고



산학협력단이 향후 원고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부담이 원고 A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A일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 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원고 산학협력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산학협력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권수아
	판사	김지건

##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 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





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관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2016. 12. 27. 법률 제14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제11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
  -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평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연차평가 결과 계속 수행이 확정되고 전문기관의 검토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된 부분에 한해 최초 협약체결 시와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가 없이도 적법하게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⑥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6조(평가에 따른 조치)

- ①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하는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별표 1)를 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장관은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원한 기획지원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기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등 후속지원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방법이나 선정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며 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 제48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 ① 장관은 별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와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의 접수와 그 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⑤ 장관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지체없이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1)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초 협약체결 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의 내용과 순서가 바뀐 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음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별표 6]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 <sup>8)</sup>			출연금환수 <sup>1)</sup>
	1회	2회	3회 이상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가.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1년	1년	1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중간평가 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인 과제	3년	3년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 <sup>2)</sup>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sup>7)</sup> 한 경우 <sup>3)</sup>	3년	3년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sup>4)</sup>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sup>3)</sup>	2년	2년	2년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추가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sup>5)</sup>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	5년	7년	10년	



된 경우		6개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sup>6)</sup>	2년	2년	2년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1)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0항 및 운영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2)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3)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관리기준 제41조제3항, 제4항)

- 4)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①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5)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 6) 협약서에 명시한 연구기관(예,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 7) 포기의 의사표시는 경영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한함
- 8)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함
- 9)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산정 시 제재사유란의 제2호 가목과 나목, 제6호의 가목부터 라목, 제8호의 가목과 나목은 각각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횟수를 산정한다.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0조(중간평가 및 조치)

-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년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중간평가는 중간서면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중간발표평가로 나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차년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



구책임자는 연구의 계속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중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최종적으로 중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의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평가 시 중간서면평가 및 중간발표평가 각각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 제21조(중간서면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중간서면평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평가가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6의 중간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과제를 분류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중단과제로 분류한다.

1.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2.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4. 매우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과제 중에서 상위 10%이내의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인 경우라도 동일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중단으로 분류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하위 15%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제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 ⑦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하고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1. 제4항에 따른 조기완료과제, 중단(미흡, 매우미흡)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 ⑨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과제 및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22조(중간발표평가)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제4조의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직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중간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공개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은 별지 17의 중간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되,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도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비율이 7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로 분류되지 못한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이때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7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중간발표평가 대상과제수가 1개 과제일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분류한다.



: 2018-05-30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 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한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발표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 2에 따라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를 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2조(제재조치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끝.